

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(안)

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중 가. 참여기술자의 (1)책임기술자란, (2)분야별 책임기술자란 및 (3)분야별 참여기술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

(1)책임기술자	(18)	
(가)등급	4	- 등급에 따라 평가
(나)경력	5	-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
(다)실적	6	- 용역의 종류, 건수,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* 공고일부터 10년(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/2만큼 기준기간 연장)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, 규모,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
(라)기술능력	2	-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(해당 용역 관련 경험, 용역수행상주안점, 용역성공 조건, 추가 제안사항 등)에 따라 상대평가
(마)업무관리능력	1	-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(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, 품질보증체계, 전문가 활용계획 등)에 따라 평가 *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(첨부1)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(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) ※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. 다만,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타당성 조사,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(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자의 실적으로 대신한다.)

(2) 분야별 책임기술자	(22)	
(가) 등급	5	- 등급에 따라 평가
(나) 경력	8	-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
(다) 실적	9	- 용역의 종류, 건수,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* 공고일부터 10년(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/2만큼 기준기간 연장)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 의 종류, 규모,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
(3) 분야별 참여기술자	(8)	-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
(가) 등급	2	- 등급에 따라 평가(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는 동일하게 평가)
(나) 경력	3	-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
(다) 실적	3	- 용역의 종류, 건수,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* 공고일부터 10년(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/2만큼 기준기간 연장)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 의 종류, 규모,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

부 칙

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	개정 사유
[별표1]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. 분야별 평가기준				[별표1]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. 분야별 평가기준				-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항목 배점을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축소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방법	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방법	
가. 참여기술자	(1)책임기술자	(18)		가. 참여기술자	(1)책임기술자	(18)		
	(가)등급	4	-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		(가)등급	4	- 등급 에 따라 평가	
	(나)경력	6	-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		(나)경력	5	-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	
	(다)실적	6	- 용역의 종류, 건수,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* 공고일부터 10년(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/2만큼 기준기간 연장)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, 규모,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		(다)실적	6	- 용역의 종류, 건수,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* 공고일부터 10년(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/2만큼 기준기간 연장)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, 규모,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	
	(라)기술능력	1	-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(해당 용역 관련 경험, 용역수행상 주안점, 용역성공 조건, 추가 제안사항 등)에 따라 상대평가		(라)기술능력	2	-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(해당 용역 관련 경험, 용역수행상 주안점, 용역성공 조건, 추가 제안사항 등)에 따라 상대평가	
	(마)업무관리능력	1	-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(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 계획, 품질보증체계, 전문가 활용계획 등)에 따라 평가 *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(첨부1)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(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) ※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. 다만,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타당성 조사,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2점 은 책임기술자의 실적으로 대신한다.)		(마)업무관리능력	1	-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(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 계획, 품질보증체계, 전문가 활용계획 등)에 따라 평가 *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(첨부1)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(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) ※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. 다만,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타당성 조사,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 은 책임기술자의 실적으로 대신한다.)	

현행				개정안				개정 사유
평가 항목	세부평가 항목	배점	세부평가방법	평가 항목	세부평가 항목	배점	세부평가방법	-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에 따라 기술자 평가
	(2) 분야별 책임기술자	(22)			(2) 분야별 책임기술자	(22)		
	(가) 등급	5	-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		(가) 등급	5	- 등급 에 따라 평가	
	(나) 경력	8	-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		(나) 경력	8	-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	
	(다) 실적	9	- 용역의 종류, 건수,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* 공고일부터 10년(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/2만큼 기준기간 연장)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, 규모,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		(다) 실적	9	- 용역의 종류, 건수,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* 공고일부터 10년(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/2만큼 기준기간 연장)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, 규모,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	
	(3) 분야별 참여기술자	(8)			(3) 분야별 참여기술자	(8)		
	(가) 등급	2	-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(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는 동일하게 평가)		(가) 등급	2	- 등급 에 따라 평가(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는 동일하게 평가)	
	(나) 경력	3	-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		(나) 경력	3	-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	
	(다) 실적	3	- 용역의 종류, 건수,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* 공고일부터 10년(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/2만큼 기준기간 연장)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, 규모,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		(다) 실적	3	- 용역의 종류, 건수,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* 공고일부터 10년(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/2만큼 기준기간 연장)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, 규모,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	